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18 선고 2024가단15542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C

피고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0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(1)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들에게 38,750,000원을 지급하고, 2022. 8. 20.부터 2024. 8. 12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4. 7. 20.부터 별지(1)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,7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5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(2)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소장 부분 송달일: 2024. 8. 12.)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조형우

별지